

스포츠기반시설을 위한 생활권 근린공원의 새로운 접근법

조민행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

A New Approach of The Community Parks for Sports Infrastructure

Min-Haeng Cho
Department of Sports & Leisure, Daegu University

요약 운동과 스포츠는 운동장에서, 근린공원은 전원적 가치의 정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생활권 근린공원이 스포츠 수행공간이 되는 스포츠기반시설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생활권 근린공원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슈 고찰 및 서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자는 지역주민의 근린공원 조성시 스포츠의 기반시설이 운동장 역할을 수행하는 넓은 평지형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1호의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도로·운동장 및 공원관리시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에서의 “광장”, “운동시설”의 개념은 협소한 의미로 해석되어 소규모로 구축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운동장(7,000㎡ 이상의 평지형 잔디 공간)”과 “스포츠시설”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연계 및 연관사업으로 인식하여 전국 3,845개의 읍·면·동에 조성된 5,135개의 근린공원을 동적기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도심내 가용 면적의 부족, 과도한 토지보상비와 재정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국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용면적과 녹지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policy on enhancing sports facilities for the communities and their residents can be considered beneficial. However, the government's sports facility policy exhibits a specific lack of knowledge on the infrastructure of urban parks. This study presents a new approach to community parks towards sports infrastructure building to overcome the lack of knowledge stated above. In this study, a narrative review for the methodological approach and an issue review for the objective approach were used. The government and state have invested approximately 1.7 trillion won for promoting sports and 2.7 billion won for the establishment of sports facilities last year. Despite such investments, there are problems of urban parks not offering sports facilities, resulting in an increased federal budget deficit. The nation maintains nearly 5,135 community parks (except small parks) throughout, offering people a great way to play, relax, and come together. Even though such a number of community parks are built, the playfields in the community parks are so narrow and small. Hence, they are insufficient to play and to serve as an athletic field for team sports.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role of playfields in the community parks that provide activities for all age groups and serve as an athletic field for team sports, based on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in sports facilities.

Keywords : Infrastructure, Sports, Facility, Community Park, Playground

이 연구는 2021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Haeng Cho(Daegu Univ.)

email: cho6447@hanmail.net

Received June 25, 2021

Revised September 1,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에서 융합 기술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가 극대화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로 운동 및 스포츠 부문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지만, 산업화 시대가 안고 있는 부정적 측면인 좌업생활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1]. 좌업생활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체중과 비만[2], 심장 및 관상동맥질환[3], 고혈압[4], 당뇨 및 대사증후군의 발병 가능성[5], 근력과 근육량 감소[6] 등 퇴행성 및 만성질환이다.

좌업생활과 건강의 연관성은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능동적 신체활동에 의한 건강 증진 기회가 있기에 많은 국가에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을 권장 및 추진하고 있다[7]. 능동적인 신체활동 참여로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것의 하나가 운동 및 스포츠시설 구축이다[8-10]. 특히 정부는 체육 및 스포츠에 의한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 및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체육예산은 1조7천5백9십4억원으로 정부전체예산 558조의 0.315%다. 이 예산 중 1조5천9백5십억원 90.7%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충당되고, 체육 및 스포츠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2천7백2십억원이 배정되었다[12]. 2020년 지방체육회 예산은 17개 시도체육회 예산 5천6백8십4억원과 228개 시군구 체육회 5천5백2십억원 등 1조1천2백억원이다. 이중 12%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체육 및 스포츠지원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을 스포츠시설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동 및 스포츠시설을 점진적 확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 및 스포츠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사례[13], 체육 및 스포츠시설의 비친환경성, 비체계성에 의한 접근성의 어려움, 이용편의성 약화, 체육 및 스포츠시설의 대도시 편중에 따른 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14]. 또한,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운동 및 스포츠시설 조성은 가용 면적의 부족, 예산부족, 과도한 토지보상

비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15].

따라서 도시공원의 생활권공원중 근린공원을 생활체육시설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운동 및 스포츠활동의 주요 공간이 되는 생활체육공간이 된다면 경제적 측면과 국토이용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권근린공원이 지역주민의 운동 및 스포츠활동 공간이 되도록 생활권근린공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및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고, 생활권근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봄, 생활권근린공원이 지역주민의 스포츠 수행공간이 되도록 스포츠 기반시설로서 생활권근린공원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 현황

2.1 생활체육시설 현황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토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단계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한 주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지원사업, 운동장생활체육시설사업, 농어촌복합체육시설사업, 레저스포츠시설사업, 마을단위체육시설사업, 간이체육시설,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지원사업, 장애인체육관지원사업이다. 마을주변 유휴공간 및 학교 부지에 간이 체육시설을 2008년까지 전국에 3,47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체육시설을 2013년까지 49개소(1개소당 9억원 지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사업으로 2013년까지 6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1,685개의 학교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다. 비록 일부사업은 종료되었거나 지방특별사업(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으로 이관되었지만, 국민체육센터지원사업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로 구축된 주요 종목별 시설은 육상경기장 252개, 축구장 1,040개, 야구장 309개 등이 전국 228시군구에 구축되었다[16]. 정부의 체육 및 스포츠시설 설치는 인기 종목 중심으로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는 체육공원의 시설 내용으로 구축되었고, 소규모 유희공간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마을체육시설, 수영장과 농구장 1면 크기의 실내공간을 갖는 국민체육센터, 농구장 1면 크기의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소규모 체육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Table 1. Public Sports Facility Status in Korea (Unit: Number)

	Total	Local Government	Sports Organizations
Track & fields	252	250	2
Football	1040	1037	2
Baseball	309	308	1
Small playground	22866	22866	-
Gymnasium	1139	1124	15
Swimmingpool	457	452	5

2.2 도시공원 현황

도시공원이란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도시내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고 적절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공원법은 1980년 제정되면서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의 종류는 주제공원과 생활권공원으로 구분된다. 주제공원은 해당 지역의 특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조례로 규정)으로 분류된다. Table 2의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며, 전국에 걸쳐 소공원이 4,888개, 어린이 공원 10,583개, 근린공원 5,135개가 조성되었다

[17].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는 체육공원은 전국 228시군구에 325개 조성되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의해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긴의자), 유희시설./운동시설(철봉과 평행봉 등의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근린공원 중 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제공원의 하나인 체육공원은 공원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 및 편익시설로 하되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율되어 있다.

무엇보다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은 도시민과 지역주민에게 기반이 되며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근린공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권 근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

3.1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을 별개사업으로 추진해 자원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의 규율 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구축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국 228 시·군·구에 육상경기장 254개, 축구장 886개, 야구장 222개, 체육관 1,124개 등이 구축되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의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

Table 2. Urban Parks Status by State & Province (Unit: Number)

	Total	Small Park	Childrens' playground	Community Park	Historic Park	Cultural Park	Water-Based Park	Memorial Park	Sports Park	Urban Natural Park	Others	Space per person (㎡)
Total	22,567	4,888	10,583	5,135	244	606	625	60	325	55	46	10.4
Seoul	2,170	430	1,214	412	13	56	15	4	5	21	0	8.4
Busan	1,006	332	443	161	5	25	24	6	6	2	2	12.1
Daegu	800	118	482	161	4	12	9	2	8	0	4	5.0
Incheon	1,204	186	612	330	6	20	22	4	17	1	6	10.8
Kwangju	642	82	402	130	7	4	9	3	3	0	2	6.8
Daejeon	585	95	313	104	8	21	16	1	10	2	15	10.8
Ulsan	586	114	329	110	6	7	15	1	3	0	1	10.5
Sejong	288	44	80	85	8	30	38	1	2	0	0	69.0
Kyunggi	6,108	1,367	2,718	1,351	61	221	215	18	150	5	2	9.5
Kanwon	907	146	460	216	9	24	30	2	16	4	0	10.7
Chungbuk	1,084	228	458	309	17	19	29	1	8	1	14	10.6
Chungnam	1,178	256	522	319	17	23	18	3	13	7	0	9.9
Chunbuk	788	153	337	254	7	18	10	4	5	0	0	14.0
Chunnam	1,390	504	400	331	25	40	57	3	26	4	0	20.1
Gyungbuk	1,792	386	890	383	16	37	53	3	16	8	0	11.4
Gyungnam	1,794	446	772	401	32	44	64	4	31	0	0	12.5
Jeju	245	1	151	78	3	5	1	0	6	0	0	6.0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공원과 생활권 공원의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이 전국에 5,135개 조성되어 있다(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 근린공원의 세부공원시설은 광장,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 녹지 등이며, 근린공원도 규모에 따라 분류되지만 세부적인 설치내용은 유사하다(Table 3). 조성된 5,135개의 근린공원에 대한 세부공원시설을 나열할 순 없지만 권역별로 1개 근린공원에 대해 살펴보면, 녹지조성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광장은 행사용 공간의 소규모 면적으로, 운동시설은 운동기구 3-6종 설치와 산책로가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18].

선진국의 근린공원 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넓은 평지형 잔디광장(운동장)의 스포츠 기반시설, 테니스장, 농구장 시설은 우리나라의 근린공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시설내용은 주제공원인 체육공원으로 간주되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의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공원을 별개 사업으로 인식하여 체육공원 조성사업(지역에 따라 보상비와 시설비로 구성된 사업비가 편차가 있지만 수백억 소요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린공원은 국토교통부의 녹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등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과 가용면적 확보의 문제, 거주지 중심의 스포츠시설이 아닌 외곽지역의 입지선정으로 접근성과 이용성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민 또는 지역민의 생활권에 위치한 근린공원이 전국에 걸쳐 5,135개가 조성되어 있지만, 이런 근린공원에서 거주민이 축구나 야구와 같은 보편적인 스포츠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거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근린공원에서 보편적인 스포츠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평지형 운동장이 구축되지 않아서다. 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이 구축되어 있지만 운동기구 몇 종에 의한 체력단련장으로 간단한 근지구력과 유연성 운동을 위한 시설과 산책로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린공원은 거주민에게 1인당 녹지공간을 제공해 건강 및 휴양시설의 경관 중심으로 조성하는 반면에 스포츠 3종목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공원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근린공원도 체육공원처럼 거주자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접근 수단이기에 체육공원의 연관사업으로 간주하여 기본적인 스포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평지형 활동공간을 충분히 구축해 자원의 이용과 활용을 높여야 한다. 비록 중복 및 유사의 개념이 정책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실용적 개념이지만[19],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 근린공원과 스포츠시설 사업은 업무 분절성과 비

Table 3. Facilities and Areas of the Community Parks in the Selected States(Unit:m²)

	Path/space	Flower beds	Picnic	Amusement	Exercise/sports	Green space	Open Year
Banson (Busan)	5,300	1,100	4,610	3,700	4,090 (Futsal)	69,320	2019
Harsan (Ulsan)	13,326/155	-	1,778	30,736	9,790(Archery), 686(playground)	220,896	2020
Naedang (Daegu)	370/172	-	51	536	48(exercise facilities)	913	2018
Ulbong (Chungju)	9,329/11,491	-	1,046	1,991	3,256 (exercise facilities badminton courts)	184,002	2019
Dukjin (Chenju)	219,171	125,809	89,314	3,275	110,437 (various coursts)	2,576,204	2020
Sinjung(Asan Chungnam)	17,312	5,415	15,047	13,750	1,995	600,161	2020
Hupo (uljin, Gyungbuk)	8,934	12,526	633	9,647	1,868	43,439	2019
Kengol (Chuncheon, Gangwon))	1,140	78	155	151	exercise facilities	8,227	2020
Bongwha (Suncheon)	118,476	35,014	11,424	25,247	44,640	4,782,988	2021
Junei (sejon)	772.7	-	190.2	-	332.3 (exercise facilities)	24,573.	2016

효율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서비스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소시키며, 자원의 이용과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기에 근린공원 조성시 스포츠 기반시설인 운동장을 구축하는 등 연관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근린공원내 광장 공간(소운동장) 면적의 협소함으로 실제적 이용성 약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과 동령 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 면적기준)에 의해 근린공원이 종류별로 10,000m²- 1,000,000m²이상 면적 기준을 구유하고 있지만 조성된 근린공원이 산림지역에 포함되거나 평지형보다는 구릉지로 조성된 공원이 대부분이다[8]. 이렇게 구릉지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다보니 휴양, 경관, 간단한 신체활동이 수행되는 조경중심의 근린공원이 형성된다. 근린공원의 시설을 광장, 휴양, 유희, 운동, 조경 및 녹지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조성하니 운동장 이상의 넓은 평지형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 거주자가 근린공원에서 스포츠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린공원 규모와 조성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지형 운동장 면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경상북도 경산시 인구는 274,416(2020년 12월 기준)명으로 15개읍면동으로 구성되었다. 경산시가 조성한 근린공원은 총 37개로 3,488,899m²로 근린공원 1개 면적당 평균 94,283m²이다[20]. 면적만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을 위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치된 시설인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이 구축되어 공원시설 내용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한편, 미국의 미주리주 콜롬비아시의 인구는 115,276 명이며, 국립공원을 제외한 공원 종류는 5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4). 자연공원과 특수목적 공원은 논외로 하고 생활권근린공원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21]. 첫 번째로 Neighborhood Parks다. 주 이용자는 도보권내 1.6km 이내의 거주자로 규모는 10 acres(40,468m²)이며, 운동장, 피크닉 장소 및 시설, 농구장, 오픈스페이스/트레일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근처에 위치하도록 권고한다. 두 번째로 Community Park다. 교외 지역 거주자를 주 이용자로 초중등학교 지근에 위치하도록 권고한다. 규모는 15-100 acres(여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로 테니스, 농구장, 운동장, 운동시설, 놀이터, 정원 등의 시설을 구축

Table 4. Parks Status in City between Korea and America(2020. 12. Data)

	Number	Space(m ²)	
Gyungnsan city (Korea)	Neighborhood	37	3,488,899
	Small Park	36	60,178
	Childrens' playground	99	213,497
	Urban Natural park	2	742,364.0
	Sub total	174	4,504,938
Columbia city (America)	Neighborhood	32	922,683
	Community	15	3,905,216
	Regional	2	3,451,968
	Nature	8	2,561,660
	Special urpose	6	327, 795
	Sub total	63	10,841,854



Fig. 1. Cases of Bird Eye View and Pictures of the Community Parks in Korea(Left) and America(Right)

한다. 세번째로 Regional Parks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스포츠시설(육상경기장, 테니스, 농구, 실내 및 실외시설, 야외공연장, 18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며, 면적크기는 200acres 이상을 권고한다.

미국의 생활권근린공원은 운동 및 스포츠 중심의 공원 시설로 지역주민이 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활동 공간인 운동장과 스포츠시설이 구축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조경 및 휴양 중심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림 1>의 내용으로 절대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근린공원 시설 구축시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엿 볼 수 있다. 콜롬비아시(미국)의 32개 근린공원중 규모가 가장 작은 Auburn Hill 공원이지만 평지형 잔디활동 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이 공간에서 축구와 야구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공원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공원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조경 및 휴양시설의 경관 중심에서 운동 및 스포츠의 동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3.3 공원 이용문화의 차이: 관람공간의 인식과 활동공간의 인식

1973년 공원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조성의 제도적 틀

이 마련되었다. 이후 88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올림픽공원조성과 함께 지방자치체로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공원, 문화공원 등 주제별 공원과 근린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원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차원에서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을 찾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지만 공원 이용 문화가 서구와는 엄연히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원문화는 생활권내에 위치한 산이나 멀리 떨어진 산에 이르기까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며 소일하는 문화가 생활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22]. 또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도 조사에서 53%가 자전거 타기와 걷기 등의 운동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53%에 이르렀으며[23], 공원이용 만족도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공원이 휴식이 가능하고 편안한 장소라고 여기는 등[24] 공원은 조경과 경관에 의한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소로 산책과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의 공원 이용은 다르다. 공원이란 의미는 군주와 귀족들이 수렵을 하기 위해 동물들을 가두어 놓았던 구획을 말하는 것으로[25], 이러한 숲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오늘날의 공원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주요 도시들이 공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공원 이용의 다양성이 이루어졌다[26]. 이를 통해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걷기와 산책을 하는 곳,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크리

켓, 테니스, 골프, 축구, 야구 등)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겼다[27]. 이러한 전원적 공간에서 주민들은 전원적 추구 활동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신체활동인 스포츠를 수행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 서구의 공원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기에 생활에 밀착된 경향을 지니는 생활공간이며 스포츠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무엇보다 공원은 거주지 중심으로 조성되어 가족문화의 장이며 운동 및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운동장 역할을 수행하는 스포츠활동 공간이다.

비록 우리나라도 개항기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 위생, 계몽을 위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공원을 조성하였지만[28], 자연을 즐기는 여가생활문화의 영향으로 공원에서는 관람과 휴식을 취하는 공원 이용문화가 연출되었다[22]. 운동과 스포츠는 체육시설 또는 운동장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공원은 휴양과 관람 중심의 정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등 공원과 운동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공원이용 문화는 공원시설 설치시 동적기능보다는 정적기능 중심으로 시설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4. 스포츠공간으로서 생활권 근린공원

개선방안

4.1 전국 3,845읍면동에 조성된 5,135개의 근린공원을 평지형 잔디운동장을 지닌 근린공원으로

정부조직법상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 스포츠, 체육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3개 부처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신체활동 및 운동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하면 5개 부처가 된다. 지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부처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29].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공원사업으로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거주민의 스포츠시설 접근성과 이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부처별로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 수단으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별개로 분리하여 조성한 결과다. 이는 생활권 근린

공원에서 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에 운동장 역할을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평지형 잔디공간이 스포츠 기반시설이라는 이해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위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지역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된다[30]. 기반시설, 기간시설,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 불리는 이 개념은 경제 활동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녹지 및 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가스공급 등 설비 등의 유통 및 공급시설, 운동장 및 문화시설 등의 문화시설, 우수지 및 방화설비 등의 방재시설로 분류하기도 한다[31]. 더구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29].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인프라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듯 운동 및 스포츠부문의 기반시설은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정 규모의 운동장 또는 평지형 공간이다. 이러한 활동공간에서 지역민들은 저마다 원하는 운동, 스포츠활동, 신체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동,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개념적 혼란 또는 이해 부족으로 이들 용어가 서로 다른 영역의 독립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 정부부처별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도 이런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이해를 위한 접근법에 논란이 있어 왔으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유형의 근활동을 포함하는 것, 운동은 경기력을 위한 특수한 목적이나 건강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규칙적이며 구조화된 신체활동을 의미, 스포츠는 조직화된 참여를 통해 경쟁적인 신체활동의 형태가 되는 것, 레크리에이션은 자유시간중에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32],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학교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33]. 운동관련 용어가 다양하며, 그 의미도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용어는 활동 목적, 활동 수행자, 수행 당시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개념 적용의 탄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로 차별화된 독립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활동 중심의 운동, 스포츠의 기반시설은 활동공간이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평지형 공간을 근린공원내에 구축해야 한다.

서구에서의 생활권근린공원은 환경보전 기능, 생태적 기능, 동적 기능의 장으로 여겨 스포츠 수행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여기고 있어 운동장(넓은 평지형 광장)을 공

원시설의 핵심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률 및 정책입안자는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근린공원에 넓은 평지형 잔디공간을 제공해 스포츠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녹지공간을 제공해 정적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근린공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전국 3,845읍면동에 조성된 5,135개의 근린공원이 동적기능의 근린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어 서구의 근린공원처럼 지역민에게 근원적인 역할을 제공함과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 활용에 경제성과 효용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4.2 생활권 근린공원의 운동장 및 스포츠 수행 공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의 주변에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가 제공됨으로써 환경, 사회, 보건, 문화 및 건강분야에서 얻게 되는 장점에 누구나 동의한다. 이러한 도시내 공원을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실정법규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로 인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도시에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1인당 녹지면적을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시 지역민의 이용성,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시설을 구축하도록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에서 가항의 도로 또는 광장을 “도로 또는 평지형 운동장”으로 규율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도 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권근린공원내의 광장은 지역주민의 휴식과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 목적이 설정된 행사용 고정시설로 설치되어 공간의 이용성이 제한적이다. 선진국의 근린공원처럼 광장 규모를 축구장 면적 최소 2배 이상의 평지형 잔디광장을 조성해 지역민의 행사, 운동장 및 녹지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원시설로서 “운동장”으로 규율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다양한 행사와 운동 및 스포츠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에 그 만큼 공간의 이용성이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4호(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형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에 따라 전국 238시군구에 조성된 5,135개의 근린공원은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구축되었다. 이 중에서 운동시설로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시설 4-5종을 설치해오고 있다. 법률이 정한 공원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운동시설을 조성하다보니 선진국의 근린공원에서처럼 지역주민이 공원에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테니스 등과 같은 활동중심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1호의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에서 “도로·운동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규에서의 “광장”, “운동시설”의 개념은 사전적 정의로 해석되어 시설 조성시 협소하게 구축하는 경향이 있기에 운동과 스포츠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수행되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운동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기준을 축구와 야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 7,000㎡ 이상의 평지형 잔디 공간”으로 규율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우리나라도 개방기에 운동, 휴식, 위생 및 계몽을 위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지만[28], 공원에서는 관람과 휴식을 취하는 공원 이용문화가 연출되었다[22]. 운동과 스포츠는 체육시설 또는 운동장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공원은 휴양과 관람 중심의 정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등 공원과 운동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생활권근린공원은 환경보전 과 전원적 가치의 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운동 및 스포츠 수행의 동적기능 장소로 여기고 있어 넓은 평지형 광장(운동장)을 공원시설의 핵심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자는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운동 및 스포츠의 기반시설이 운동장 역할을 수행하는 넓은 평지형 공간임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1호의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에서 “도로·운동장 및 공원관리시설”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규에서의 “광장”, “운동시설”의 개념은 협소한 의미로 해석되어 소규모로 구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능동적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운동장(7,000㎡ 이상의 평지형 잔디 공간)”과 “스포츠시설”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건강, 복지, 여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연계 및 연관사업으로 인식하여 전국 3,845개의 읍·면·동에 현존하는 5,135개의 근린공원을 지역민의 정적기능에서 동적기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인식전환과 함께 미비한 법률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생활권 근린공원에 대한 이러한 전환은 도심내 가용 면적의 부족, 과도한 토지보상비와 재정부담,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근린공원을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면 국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용면적과 녹지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References

- [1] J. A. Yu, “An Introduction of Teaching and Instruments in Pphysical Education”, Daehan Publisher, Seoul, Korea, 2016.
- [2] C. L. Ogden, M. D. Carroll, B. K. Kit, K. M. Flegal, “Prevalence of Childhood and Adult Obesity in the United States”, 2011-2012, JAMA, Vol.311, No.8, pp.806-814, 2014.
DOI: <https://doi.org/10.1001/jama.2014.732>
- [3] J. Li, J. Siegrist, “Physical Activity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 A Meta-analysis of Prospective Cohort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9, No.2, pp.391-407, 2012.
DOI: <https://doi.org/10.3390/ijerph9020391>
- [4] L. L. Lee, M. C. Watson, C. A. Mulvaney, C. C. Tsai, S. F. Lo, “The Effect of Walking Intervention on Blood Pressure Control: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7, No.12, pp.1545-61, 2010.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0.08.008>
- [5] S. Shenoy, R. Guglani, J. S. Sandhu, “Effectiveness of An Aerobic Walking Program Using Heart Rate Monitor and Pedometer on The Parameters of Diabetes Control in Asian Indians with Type 2”, Prim Care Diabetes, Vol.4, No.1, pp.41-45, 2010.
DOI: <https://doi.org/10.1016/i.pcd.2009.10.004>
- [6] C. Sherrington, A. Tiedemann, N. Fairhall, J. C. Close, S. R. Lord, “Exercise to Prevent Falls in Older Adults: An Updated Meta-analysis and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NSW Public Health Bull, Vol.22, No.3-4, pp.78-83, 2011.
DOI: <https://doi.org/10.1071/NB10056>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dietphysicalactivity/global-PA-recs-2010.pdf> (accessed Feb. 20, 2021).
- [8] S. I. Kang, C. W. Lee, M. H. Cho, “The Role of Recreational park As Sustainable Sport Facilities for The Community Resi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5, No.2, pp.291-300, 2006.
- [9] H. S. Song, “Promoting Sports Policy and Sports Club in Germany”, 2009. Retrieved from: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06965.pdf> (accessed March 13, 2021).
- [10] M. H. Cho, B. D. Oh, “Sustainability of Remodeling School Sport Field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17, No.4, pp.297-310, 2013.
- [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moting Sports Industry with Other Ministries”, 2016. Retrieved from: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965 (accessed March 29, 2021)
- [1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Brief of Federal Budget in 2021”, 2021. Retrieved from: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880&pMenuCD=0413000000&pCurrentPage=1&pTypeDept=&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accessed April 5, 2021).
- [1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Report on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Everyone”, 2019. Retrieved from: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1212> (accessed May 3, 2021).
- [14] Busan Citizens'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Report on Monopoly of Using the Public Sports Facility”, 2013. Retrieved from: http://we21.or.kr/bbs/board.php?bo_table=bbs_2_1&wr_id=131 (accessed Feb 13, 2021).
- [15] M. O. Kim, J. S. Ko,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ports Facility Composition Utilizing Idle Space and Overseas Ca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38, pp.85-100, 2016.
- [1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Report of National Public Sports Faciliti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2020.
- [17] Korea Statistics, “City Parks & Green Spaces”, 2021.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 [l.do?idx_cd=1205](#) (accessed Feb 15, 2021)
- [18] Public Data Portal, National Urban Park Data, 2021.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tcs/dss/selectDataSetList.do?keyword=%EA%B7%BC%EB%A6%B0%EA%B3%B5%EC%9B%90&brm=&svcType=&instt=&recmSe=N&conditionType=init&extsn=&kwrdArray> (accessed Feb 15, 2021)
- [19] H. K. Kang, S. O. Kang, K. H. Jung, Y. D. Kim, K. T. Yu, et al., "A report on Social Affair Programs and The Coalition's Record on Health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Korea, 2015.
- [20] GyungSan City, "City Park Data, 2021", 2021. Retrieved from: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enu_uid=2246 (accessed March 15, 2021).
- [21] Columbia City, "Columbia Parks & Recreation.", 2021. Retrieved from: <https://www.como.gov/parksandrec/> (accessed March 15, 2021).
- [22] K. G. Cho, "An Comparative Analysis of Park Use Culture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Korea", Journal Environmental Studies, Vol.45, pp.33-54, 2007. Retrieved from: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90663> (accessed April 8, 2021)
- [23] Seoul Metropolitan Council, "A survey of Users' Satisfaction with Urban Parks in Seoul", Seoul Metropolitan Council, Korea, 2015. Retrieved from: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6832998> (accessed April 20, 2021).
- [24] M. Y. Hong, O. K. Lee, M. G. Jang, "Gender Impact assessment on a City Park Satisfaction of A User in Busan Metropolitan", Busan Woma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11.
- [25] S. D. Annemarie, M. J. Ostwald, "Prospect and Refuge Theory: Constructing a Critical Definition for Architecture and Desig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in Society, Vol.6, No.1, pp.9-24, 2013, DOI: <https://doi.org/10.18848/2325-1328/CGP/v06i01/38559>
- [26] S. J. Yeum, Ch, I. Park, "Satisfaction Experienced i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according to Their Component and Arrangement - A Case Study on Taumma Newtown, Japa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39, No.5, pp.12-20, 2011.
- [27] A. Barker, N. Booth, D. Churchill, A. Crawford, "The Future Prospects of Urban Public Parks", 2017, Retrieved from: <https://futureofparks.leeds.ac.uk/wp-content/uploads/sites/26/2017/07/Job-38853-Future-of-Parks-Findings-Report.pdf> (accessed May. 5, 2021)
- [28] Y. J. Woo, J. H. Pae, "Korean Perspectives on Parks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39, No.6, pp.76-85, 2011. DOI: <http://doi.org/10.9715/KILA.2011.39.6.076>
- [29] P. K. Cho, B. S. Min, K. Wh, Soun, S. Wh, Park, S. S, Kim, et al., "Study on Disposition and Improvement of Urban Infrastructures for Citizen's Liv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2013.
- [30] S. H. Hong,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FI for Infrastructure - Focused on The Purpose and It's Limits of The PFI", Public Land Law Review, Vol.58, pp.221-243, 2012.
- [31] Daum Encyclopedia, "Infrastructure", Retrieved fro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E0008108> (accessed April 15, 2021).
- [32] C. J. Caspersen, K. E. Powell, G. M. Christenson, "Physical Activity, Exercise and Physical Fitness: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Health-Related Research", United States Public Health Reports, Vol.100, pp.126-131. Retrieved from: <https://pubmed.ncbi.nlm.nih.gov/3920711/> (accessed April 19, 2021).
- [33] Y. K. Ahn, D. K. Kim, O. R. Kwon, H. S. Song, H. S. Kim, "Redefinition of Term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Korean Philosophy Journal for Sport & Dance, Vol.19, No.4, pp.33-60, 2011.

조민행(Min-Haeng Cho)

[정회원]



- 2000년 5월 :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체육학박사)
- 2004년 7월 ~ 2006년 2월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교육, 스포츠관리